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9-14

의 정 부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구합11980 취득세 등 추징처분 취소
원 고	A
피 고	[redacted]시장
변 론 종 결	2017. 11. 28.
판 결 선 고	2018. 1. 2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7. 2. 7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6,120,510원, 지방교육세 4,053,580원, 농어촌특별세 5,437,160원(각 가산세 포함)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9-14

가. 원고는 [redacted]시 B 토지 지상에 미술관으로 사용할 건물(2층, 연면적 1483.75㎡, 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을 신축하여 2011. 5. 24. 피고로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(미술관)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2. 10. 2.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44조에서 정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2011. 6. 27.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다.

다.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대한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(이하 위 각 세목을 합하여 '취득세 등'이라고 한다) 합계 54,188,170원을 감면하였으나,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. 12. 8.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6,120,510원, 지방교육세 4,053,580원, 농어촌특별세 5,437,1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.

라. 이에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779호로 위와 같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, 위 법원은 2016. 12. 27. 위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지방세기본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마.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미술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종전과 동일한 이유로 2017. 2. 7.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취득세 76,120,510원(= 본세 51,824,970원 + 가산세 24,295,540원), 지방교육세 4,053,580원(= 본세 2,961,420원 + 가산세 1,092,160원), 농어촌특별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9-14

37,017,840원(= 본세 5,437,160원 + 가산세 1,735,380원)을 부과하는 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고 한다)을 하였다.

바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은 2017. 6. 8.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없는 사실, 갑 제1, 4, 6 내지 13호증, 을 제1 내지 3,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1)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,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미술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.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,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용도, 즉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함이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.

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미술관으로 등록하지는 아니하였으나,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용도, 즉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,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.

2) 또한 피고가 종전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9-14

였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처분이 종전 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추징처분임에는 변함이 없고, 추징처분 사유는 본래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사유와는 다른 것이므로, 본래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법한 추징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. 뿐만 아니라 본래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본래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할 수도 없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.

나. 관계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,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(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).

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는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,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(2012. 12. 21. 대통령령 제24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21조는 "법 제44조에서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'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."라고 규정하면서, 제2호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규정하고 있다.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"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9-14

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"라고 규정하면서,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.

위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,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"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"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"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"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미술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,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,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미술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근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(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9-14

재판장 판사 이효두

판사 박종환

판사 이영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9-14

관계법령

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2. 10. 2.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44조(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)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 및 「지방세법」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
제94조(감면된 취득세의 추징)

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
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(2012. 12. 21. 대통령령 제24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21조(평생교육시설의 범위)

법 제44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"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2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. 끝.